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4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김선민·서왕진·김준형

백선희 · 강경숙 · 신장식

윤종군 • 박은정 • 황운하

한창민 · 김재원 · 문진석

차규근 • 박지원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, 그마저도 연 1~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, 규모가 큰 교통·주거·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,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 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3조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"를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3조(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)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 - ② 제1항의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59조의11제4항 전단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59조의13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한다.

제85조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계획에 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"를 "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
①
<u>관</u>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
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
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
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<u>협</u>
<u>의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<u>및 시·도지사는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(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
원회)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
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

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 원회를 조직 ·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4조(재활상담 등의 조치) ① 저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・광 역시장 • 특별자치시장 • 도지사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 · 구청장(이하 "장애인복 지실시기관"이라 한다)은 장애 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.

1. ~ 4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복?	지	관련	사임	클의	기호		조	사
• /	실시	등을	을 하	느	데에	필	요	한
사	항의	심	의를	위	하여	특	増.	시
. :	광역	시 •	특별	자		도	•	특
<u></u>	 자치	도에	시	· 도	지사	소	<u>속</u>	Ò
로	굉	·역징	-애인	정	백조정]위	원.	회
를	둔대							

② 제1항의 광역장애인정책조 정위원회를 조직 · 운영하는 데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세34조(재활상담	등의 조치) ①
	<u>시 • 도지사</u>
	1 1 6 \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 의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④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 광역시장 • 특별자치시장 • 도지 사・특별자치도지사는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 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 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⑤ (생략)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

- ①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 자치시장 • 도지사 • 특별자치도 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 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 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(이하

같음)
④ <u>시·도지</u>
<u> </u>
, r al il
<u>시·도지사</u>
⑤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 ① <u>시·도지사</u>

"피해장애아동"이라 한다)의 임 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 동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 다.

③ (생략)

② (생 략)

제85조(권한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 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
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 하 이 조에서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제85조(권한위임 등) ①
<u>\lambda</u>
도지사
② (현행과 같음)